



中国知的財産権司法保護現況

特許法人 L&K
パートナー弁理士

呉 世界

中国の知的財産権制度は、まだ 30 年にならない長くない歴史を持っていて、制度の運営と権利範囲の解釈の主体及びその解釈の一貫性のための法理論、そして、判例においてまだ先進国のレベルには及んでいないと思われる。

中国の知的財産権制度は、一部運営上、韓国とは異なる独特な制度と手続きを持っているが、権利取得の手續きと要件、そしてその保護に関する規定は世界的なレベルに制定されていると思われる。

中国知的財産権の司法保護領域は、特許権、商標権、著作権、営業秘密、集積回路設計、植物新品種、不正競争などである。

尚、知的財産権訴訟は、行政訴訟、民事訴訟、刑事訴訟に分類される。知的財産権行政訴訟は、中国行政機関の行政行為が正当であるかどうかに関する訴訟で、知的財産権行政管理機関が一方になり、知的財産権権利者、使用者、不法行為者が相手方になるのである。

知的財産権民事訴訟は、主に知的財産権権利者とそれに関わる個人及び企業間の眷族紛争、契約紛争、不法行為紛争などである。

知的財産権刑事訴訟は、人民検察または知的財産権権利者が被害者として不法行為者の行為が犯罪であ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人民法院に起訴することである。

知的財産権行政訴訟は、特許再審委員会の再審決定に不服するか、特許無効または維持決定に不服する場合、決定された日から 3 月以内に人民法院に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訴が提起された場合、再審委員会は法廷に出席し応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知的財産権民事訴訟は、知的財産訴訟を審理するために特別法廷を設けていて、

このような法廷を知的財産権法廷という。

簡易裁判所；北京 1 箇所、上海 2 箇所

1 審地方裁判所（中級人民法院）17 箇所；北京、上海、重慶など

2 審高等裁判所（高級人民法院）10 箇所；北京、上海、重慶など

3 審最高裁判所（最高人民法院）1 箇所；中国人民最高法院

地域管轄において、知的財産権の権利に関する訴訟の地域管轄は被告住所地管轄人民法院であり、被告住所地と実際居住地が異なる場合には実際居住地管轄人民法院である。尚、同一訴訟にて多数の被告住所地がある場合は、各居住地法院が管轄法院となる。知的財産権契約訴訟の場合、被告住所地と法律事実所在地に基づいて管轄法院が確定される。知的財産権侵害訴訟の場合、被告住所地と不法行為地の法院が管轄法院となる。

訴前禁止命令は、特許侵害、商標侵害、著作権侵害、集積回路設計侵害に対し、訴を申請する前に、人民法院に関連行為を中止させ、財産保全措置を取れるようにしている。申請人は、人民法院に申請書とともに不法行為の証拠と担保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民法院は申請日から 48 時間以内に決定を出し、差押え、凍結などの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尚、申請人は 15 日以内に本訴訟を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上記人民法院の禁止命令決定に不服する場合、法院に行政裁判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人民法院は不法行為者が証拠毀損する可能性がある場合、訴訟参加人の請求により職権に基づき証拠保存措置を取ることができる。

提訴期日として、権利者が侵害行為を知るか、知ることができた日から 2 年以内に提訴しなければならない。

損害賠償は、権利者の実際損失、侵害者の利益、特許ロイヤリティに基づいて算出し、精神的損害賠償も請求できる。

知的財産権民事訴訟は専門家的な技術的特徴により、事実認定と事実審理に困難があり、訴訟方式以外に訴訟外的解決案に興味を持つようになり、中国での知的財産権の訴訟外的解決案としては協商、調停を通じる和解、仲裁がある。

知的財産権刑事訴訟は、公訴手續きと自訴手續きに区分され、公訴は被害者が公安機関に捜査依頼をすることであり、自訴手續きは人民法院に提訴することであり、侵害者には 3 年以下の懲役または罰金刑が与えられる。

중국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L&K 엘엔케이
파트너 변리사
오 세계

중국 지적재산권 제도는 아직 30년이 안된 길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의 운영과 권리범위 해석의 주체 및 그 해석의 일관성을 위한 법 이론 그리고 판례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일부 운영상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제도와 절차를 갖고 있지만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와 요건 그리고 그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중국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영역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직접회로설계, 식물신품종, 부당 경쟁 등이다.

지적재산권 소송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분류된다. 지적재산권 행정소송은 중국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지적재산권 행정관리기관이 일방이 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 사용자, 불법행위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은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그와 관련된 개인 및 기업 간의 권속분쟁, 계약분쟁, 불법행위 분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적재산권 형사소송은 인민검찰 또는 지적재산 권리자가 피해자로서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행정소송은 특허제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무효 또는 유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결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소 제기가 된 경우 제심위원회는 법정에서 나와 응소를 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은 지적재산 소송을 심리하기 위하여 중국은 특별법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을 지적재산권법정이라고 한다.

간이법원 ; 북경에 1 곳, 상해에 2 곳

1심 지방법원 (중급인민법원) 17 개소 ; 북경, 상해, 중경 등

2심 고등법원 (고급인민법원) 10 개소 ; 북경, 상해, 중경 등

3심 대법원 (최고인민법원) 1 개소 ; 중국인민최고법원

지역관할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권속소송의 지역관할은 피고 주소지 관할 인민법원이고, 피고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거주지 관할 인민법원이며, 동일 소송에 여러 피고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지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지적재산권 계약소송의 경우 피고주소지와 법률사실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확정된다.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경우 피고주소지와 불법행위지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소건금지명령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집적회로설계침해에 대해 소를 신청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행위를 중지하고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불법행위 증거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 압류,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신청인은 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기 인민법원의 금지명령결정에 불복을 할 경우에 법원에 행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불법행위자가 증거훼손 가능성이 있을 때 소송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직권에 의해 증거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소기일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이익, 특허로알티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정신적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은 전문가적 기술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사실인정과 사실심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소송방식 이외에 소송의적해결방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소송의적 해결방안으로는 협상, 조정을 통한 화해, 중재가 있다

지적재산권 형사소송은 공소절차와 자소절차로 구분되며, 공소는 피해자가 공간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고, 자소절차는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는 절차로서, 침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주어진다.